



제 993 호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780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공 고

- 공고 제2011- 857호 도로의 지정공고 5
- 공고 제2011- 863호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6
- 공고 제2011- 86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7
- 공고 제2011- 865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8
- 공고 제2011- 8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19
- 공고 제2011- 869호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결과 공시송달 공고 42
- 공고 제2011- 87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냉정지구2-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알림 공고 44
- 공고 제2011- 8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도림동 소3-6호선)공사완료 공고 53

고 시

- 고시 제2011- 57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결정 (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54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7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7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구 및 구 산하기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45,000원”을 “55,000원”으로,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사무소, 출장소”를 “사업소,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숙직근무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실비로 보상함으로써 당직근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수당 변경 (제5조제2항)
 - 평일 숙직수당 : 45,000원 → 55,000원
 - 일직 및 휴무를 보장할 수 없는 숙직 : 50,000원 → 60,000원
- 민선 5기 조직개편 사항 반영 (제5조제3항)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1 - 857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로 현황

- 가. 위 치 : 남촌동 4-1, 5-1, 6-1
- 나. 도로길이 : 72.1m
- 다. 도로너비 : 6m
- 라. 도로면적 : 507m²
- 마. 토지소유자 : 김정호, 장선자, 장성환, 장현기
-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허가(신축)

2. 건축허가 현황

- 가. 위 치 : 남촌동 6-2
- 나. 건 축 주 : 장선자
- 다. 허 가 일 : 2011.07.11
- 라.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마. 규 모 : 연면적 99.84m², 지상1층.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1-8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7.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 정원 증가
-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임용과 보수에 대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직원 정원 변경 (안 제11조) : 현재 5명 ➡ 변경 7명
- 직원 임용 자격기준을 6급~9급까지 구체화 변경 (안 제12조)
- 조직 체계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 센터기능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안 제13조)

- 최초 임용시 호봉 반영을 위한 경력 인정표 신설 및 운영요원 승진 규정 신설, 2011년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반영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453-2242, FAX : 453-2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 정원 증가
-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임용과 보수에 대한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 직원 정원(현재 5명→변경 7명) 변경 【 안 제11조 】
- 직원 임용 자격 변경 【 안 제12조 및 [별표1] 】
 - 6급부터 9급까지의 자격기준을 구체화
- 조직체계 및 기능 변경 【 안 제13조 및 [별표2] 】
 - 조직 기능에 현실성 반영 및 구체화
 - 센터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조정가능 반영
- 직원 보수 변경 【 안 제14조 및 [별표5] 신설 】
 - 최초 임용시 호봉 반영을 위한 경력 인정표 신설
 - 운영요원 승진 규정 신설
 - 2011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반영
- 통합되는 조항으로 인해 중복조항을 삭제
【 제12조 제5항, 제14조 제4항 】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지침 (2010년,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이하 “직원”이라 한다) 소장, 운영요원 등 5인”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소장, 운영요원 등 7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②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조직체계 및 기능)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체계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소장은 일반직 5급 상당, 운영요원은 일반직 6급에서 9급 상당으로 하고, 최초 임용시 [별표 5]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다만, 9급에서 5년 이상,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시 1호봉을 감한다.

- ③ 직원의 수당은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의 임용과 최초 호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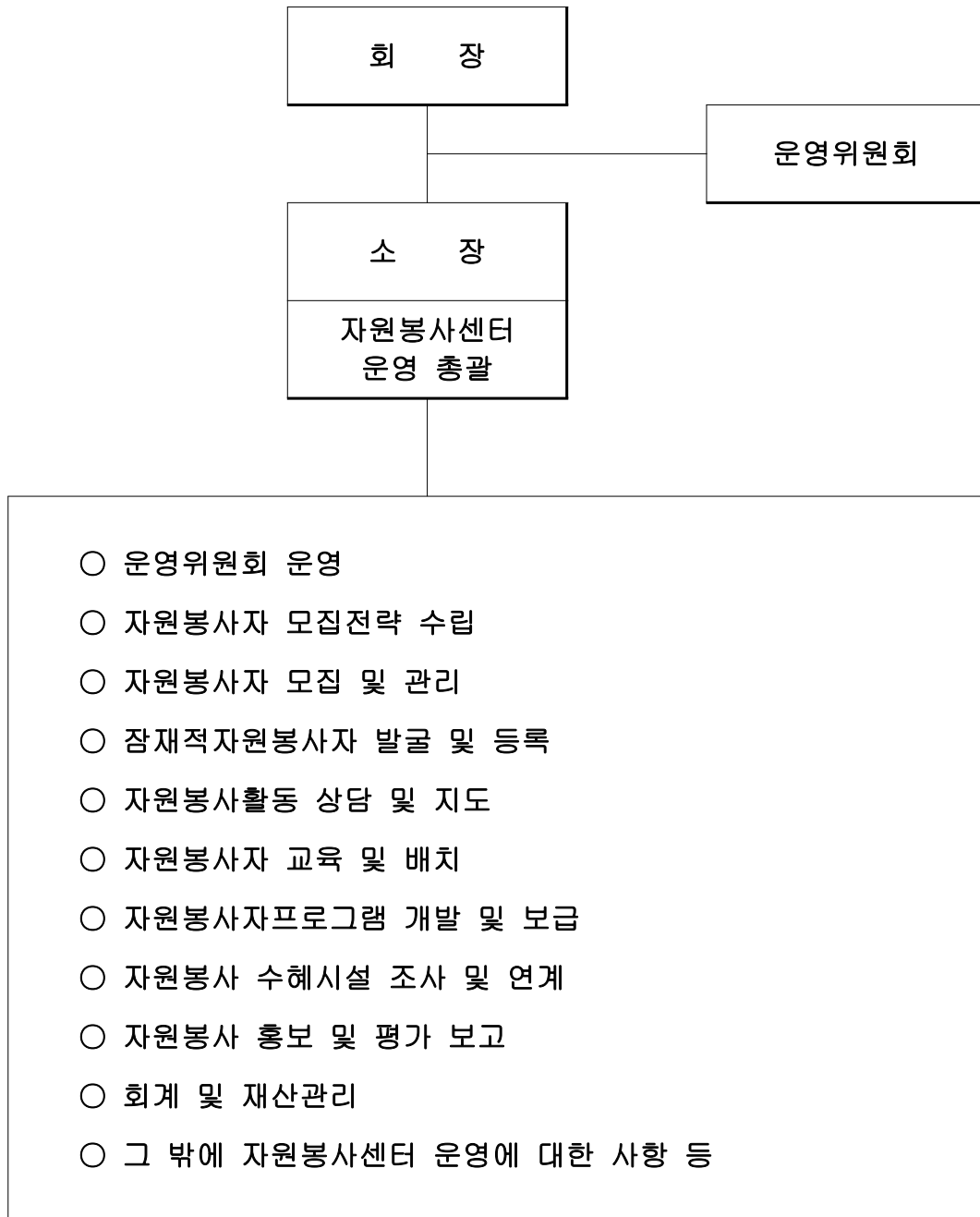
[별표 1]

직원 임용 선발 자격

구 분	채 용 인 원	선 발 시 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계	7 명			
소 장	1 명	서류전형	면 접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급 운영요원	2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7급 운영요원	2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8급 운영요원	1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8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9급 운영요원	1명	서류전형	면 접	○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9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기능



[별표 5]

경 력 인 정 표

구 분	경력 인정 내용	비 고
100%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근무경력 2. 군 복무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시 및 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80% 적용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 외 자원봉사 관련 기관 근무경력(「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청소년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 임원 경력	

※ 각 경력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호봉을 정하며, 초임 호봉은 소장 15호봉,
6급 팀장은 12호봉, 운영요원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행	개정안
제11조(직원의 정원) <u>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이하 “직원”이라 한다)소장, 운영요원 등 5인 이내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제12조(직원의 임용) ① (생략) ② <u>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u> ③ ~ ④ (생략) ⑤ <u>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1] 과 같다.</u> 제13조(조직체계 및 기능) <u>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u> 제14조(보수) ① (생략) ② <u>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소장은 일반직 5급 8호봉, 운영요원은 일반직 6급 5호봉과 8급 3호봉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 한다.</u>	제11조(직원의 정원) <u>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소장, 운영요원 등 7명 -----</u> -----. 제12조(직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 자격은 [별표 1]과 같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3조(조직체계 및 기능) <u>자원봉사센터의 조직체계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u> <u>다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제14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소장은 일반직 5급 상당, 운영요원은 일반직 6급에서 9급 상당으로 하고, 최초 임용시 [별표 5]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다만, 9급에서 5년 이상,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시 1호봉을 감한다.</u>	

현행	개정안
③ <u>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u> ④ <u>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u>	③ <u>직원의 수당은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u> <u>< 삭제 ></u>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 서 별 의 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8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고지 및 독촉 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압류일자	위반차량	압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체납액 (원)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이옥자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11.06.03	인천72라 1346	인천72라 1346	홈플러스 구월점 (2010.10.29 14:05)	108,600	2011.06.07	2011.06.16	폐문 부재
라영배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11.06.03	31마3110	31마3110	간석동 아트폴리스 (2010.09.03 14:00)	109,800	2011.06.07	2011.06.15	폐문 부재
백명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11.06.03	64오6204	64오6204	간석동 아트폴리스 (2010.08.06 14:55)	109,800	2011.06.07	2011.06.17	수취 인부 재

3. 공고기간 : 2011. 07. 13~ 07. 28(15일간)

4. 유의사항

- 최초 과태료(금일십만원) 부과 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증가산금은 최장 60개월 까지 부과 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7.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8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주)거화종합 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경기49마2225	홈플러스 간석점 (2011.04.13 15:30)	2011.06.15	2011.06.21	수취인불명
윤혜옥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09누4035	논현동 에코메트로 905동 지하주차장 (2011.05.25 19:11)	2011.06.15	2011.06.21	주소불명
최형석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9루9495	논현동 에코메트로 905동 지하주차장 (2011.05.25 19:11)	2011.06.15	2011.06.21	주소불명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1. 07. 13 ~ 2011. 07. 2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7. 1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8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17조, 제18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전에서 10일 전으로 함
- 규칙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함
- 세무조사 연기결정 통지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개정 함

나.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외요건 추가(안 30조)

다. 지방세관계법 분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과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안 제17조, 제18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전에서 10일 전으로 함
 - 규칙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함
 - 세무조사 연기결정 통지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개정 함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외요건 추가(안 30조)
- 지방세관계법 분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표준안』
- 관계법령 발체사항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를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로 하고, 제2호 중 ““조사공무원”이라 함은”을 ““조사공무원”이란”으로 하며, 제3호 중 ““일반조사”라 함은”을 ““일반조사”란”으로 하고, 제4호 중 ““특별조사”라 함은”을 ““특별조사”란”으로 하며, 제5호 중 ““직접조사”라 함은”을 ““직접조사”란”으로 하고, 제6호 중 ““서면조사”라 함은”을 ““서면조사”란”으로 하며, 제7호 중 ““전자신고”라 함은”을 ““전자신고”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저해하지”를 “해치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7일전에”를 “10일 전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작하되”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1조제1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각각 “실시할 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 등”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입회하거나”를 “참석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년간”을 “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착수에 고”를 “조사시작 예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수에”를 “시작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 제목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착수하는”을 “시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조사내용보고”를 “조사복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고해야”를 “복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서”를 “복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준비조사시”를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든 조사적출사항에”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단서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른 납기전”을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공무원의 수칙”을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증)

○ 법 인 명 : (인)	법 인 유 형	주요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제 조 업 ()	
○ 사 업 년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건 설 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판 매 업 ()	
	운 송 업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기 타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297mm×210mm)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남동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6동) 남동구청 세무과
우편번호 : 450-750

※ 문의사항 전화 : (000) 000-000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식목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사업장명	
------	--	-----	--	------	--

구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 서식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등

「법인세법」 98조 :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주민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남동구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 정당 세 액 (d)	기납부 세 액 ①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297mm×210mm)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m^2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m^2 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times$ 250원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인천광역시남동구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② 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③ 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④ = (① - ②)															
급여지급일															
④ 산출세액 ④ ×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제3항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제 64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실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 ----- ----- -----. 2. “조사공무원”이란 ----- ----- ----- ----- -----. 3. “일반조사”란 ----- ----- ----- -----. 4. “특별조사”란 ----- ----- ----- -----.

현 행	개 정 안
5. “<u>직접조사</u>”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의무자 또는 당해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u>서면조사</u>”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7. “<u>전자신고</u>”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u>당해</u>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생략)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 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u>저해하지</u>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5. “<u>직접조사</u>”란 ----- ----- ----- -----. 6. “<u>서면조사</u>”란 ----- ----- ----- -----. 7. “<u>전자신고</u>”란 ----- ----- ----- -----.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 ----- ----- ----- ----- <u>해당</u> ----- ----- -----.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해치지</u>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u>7일전에</u>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u>7일 이내에</u>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u>조사기간을</u>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u>실시함에 있어서</u>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 <u>10일 전에</u>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의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조사개시 전까지</u> ----- -----. 제18조(조사기간) ----- ----- <u>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작하되</u> -----.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 - <u>실시할 때</u>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조사를 <u>실시함에 있어서</u>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 -- <u>실시할 때</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생략)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u>변호사 등</u>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u>입회 하거나</u>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u> ----- <u>참석 하거나</u> -----.
제24조(조사계획)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u>년간</u>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통합조사, <u>조사착수예고</u>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계획) ① ----- ----- <u>연간</u> ----- -----. ② ----- ----- <u>조사시작 예고</u> ----- -----.
제25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는 때에는 <u>착수에</u>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기타</u>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 ③ (생략)	제25조(조사준비) ① ----- ----- <u>시작에</u>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조사의 <u>착수</u>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u>착수하는</u>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u>별지 제37호 서식</u>)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 <u>시작</u> 등) ① ----- ----- <u>시작하는</u> ----- ----- -----. ②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u>별지 제99호서식</u>----- -----.
제28조(조사내용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에 의하여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u>보고해야</u>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복명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 <u>보고서</u>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때에는</u>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 <u>당해</u>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 3. (생략)	제28조(조사복명) ① ----- ----- ----- <u>복명하여야</u> ----. ----- ----- ----- <u>복명서</u> -----. ② ----- ----- <u>경우에는</u> ----- ----- -----. 1. <u>해당</u> ----- ----- 2.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생략) ② <u>준비조사시</u>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복명한다. ③ <u>모든 조사적출사항에</u>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u> ----- ----- ----- -----. ③ <u>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u> ----- ----- -----.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와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 신 설 >	제30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 2. ~ 3. (현행과 같음)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 수칙 등) ① 구 청장은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지방세법」 제64조에 따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 수칙 등) ①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조사공무원의 행동 수칙-----.

실 · 과 · 소 · 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869호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결과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가 완료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1. 7. 15. ~ 7. 30.
4. 이의재결서 수령(보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453-2713)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정본)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김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3	14442-0275-8354	반송	부재	만의골 지구
김일호	인천 남구 송의동 339-22	14442-0275-8355	반송	폐문부재	만의골 지구
김정호	인천 서구 검암동 595-5 마젤란21 102-1205	14442-0275-8356	반송	폐문부재	만의골 지구
한기수	인천 남구 송의동 42-79	14442-0275-8359	반송	수취인불명	도림1 지구
김명복	인천 남구 도화동 76-17 (2층)	14442-0275-8361	반송	이사	도림1 지구

6. 기타사항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87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냉정지구 소2-1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8호(2006. 6. 5)로 시설결정 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냉정지구 소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6) 및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구간 내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 남동구 수산동 1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사 업 명
구 분	노선 번호	규 모	
도 로	냉정지구 소로 2-1호선	폭원(B)= 8m, 연장(L)=519m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1. 4.30 ~ 2011.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1) 용지 조서(변경 없음) : “계재 생략”
 - (2) 지장물 조서(변경 있음) : 붙임 지장물 조서 참조

6.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계재 생략”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 : 지장물 조서 1부.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191-1	도	10,349	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2	201-5	도	10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3	597-21	도	38,237	1,33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	177	도	20	20	공병균	남동구 수산동 245				
5	201-6	전	50	50	김영찬외 3인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333-3 원천1차삼성아파트 5동 902호				
6	200-6	대	1	1	백애란	남동구 수산동 200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권자	
7	201-2	도	86	86	김영찬외 3인 인천광역시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333-3 원천1차삼성아파트 5동 902호 인천광역시				
8	200-7	도	89	89	송만용	남동구 수산동 182				
9	178-2	전	129	129	공진섭	남동구 수산동 156	공미자	강서구 등촌동 653-1 대광연립 205호	근저당권자	
10	178-1	도	46	46	공진섭	남동구 수산동 158				
11	180-6	전	52	52	송병순	남동구 수산동 65-2	한국삼공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63	근저당권자	
12	179-1	전	52	52	구도희	남동구 수산동 199				

13	167-2	대	40	40	구도회	남동구 수산동 199	인천원예 농업협동조합	동구 송림동 51-71	근저당권자	
14	169-9	대	63	63	구도회	남동구 수산동 199	인천원예 농업협동조합	동구 송림동 51-71	근저당권자	
15	167-3	대	33	33	황순이	부평구 부개동 477-1 대동아파트 2-108				
16	169-7	대	58	58	용석중	만수동 1048 금호아파트 104동 401호				
17	168-2	대	100	100	김영란	남동구 수산동 168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권자	
18	168-3	대	20	20	김영란	남동구 수산동 168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권자	
19	169-8	전	24	24	용석중	만수동 1048 금호아파트 104동 401호				
20	169-6	대	140	140	용석중	만수동 1048 금호아파트 104동 401호				
21	162-2	묘	48	48	공진택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333 주공아파트 159동 203호				
22	159-4	도	18	18	공진균	남동구 수산동 159-2				
23	159-6	대	35	35	공진균	남동구 수산동 159-2				
24	160-4	전	78	78	차은영	남동구 수산동 160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25	159-7	전	2	2	공진균	남동구 수산동 159-2				
26	160-3	대	32	32	차은영	남동구 수산동 160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27	160-2	도	8	8	차은영	남동구 수산동 160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28	159-5	대	33	33	공진균	남동구 수산동 159-2				

29	157-1	전	58	58	공진근	남동구 수산동 156	인천원예 농업협동조합	동구 송림동 51-71	근저당권자	
30	158-1	대	126	126	백환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550-3 행복한마을 2409-901				
31	156-1	대	52	52	공진섭	남동구 수산동 158				
32	155-2	전	40	40	성옥돌	남동구 수산동 149				
33	150-12	전	91	91	(주)지,엠푸드 씨스템	남구 학익동 698-7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자	
34	152-1	답	153	153	윤인옥	남동구 간석동 437-11	간석 새마을금고	남동구 간석동 39-2	근저당권자	
35	151-1	답	290	290	김명남	남구 도화동 42-6				
36	150-11	전	136	136	김재환	남구 용현동 565-96	용현동새마을금고	남구 용현동 565-63	근저당권자	
37	260-5	답	1	1	서진순	남동구 간석동 917-2 두진아파트 104호				
38	260-4	전	210	210	최홍락	남동구 논현동 603-1 주공아파트 806-1304				
39	142-7	전	157	157	조동일	연수구 연수동 635 연수1차 우성아파트 108동 201호	남동구 농업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권자	
40	141-7	전	33	33	조한경	남구 주안동1525-20 선경쉐르빌 103동 701호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자	
41	140-42	전	62	62	부민건설 주식회사	남구 주안동 1593-47 제비호 2층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자	
42	140-31	묘	87	87	부민건설 주식회사	남구 주안동 1593-47 제비호 2층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자	
43	140-43	전	164	164	박세현	남구 주안동 939-5	서인천 새마을금고	서구 심곡동 333-5	근저당권자	
계				4,274						

지 장 물 조 서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07(좌)
2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07(좌)
3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07(좌)
4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07(좌)
5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07(좌)
6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10(좌)
7	수산동	201-6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10(좌)
8	수산동	177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22(우)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093(우)
9	수산동	178-2	변경없음	관 정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56(우)
10	수산동	179-1	변경없음	간 판	지주간판	개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093(우)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007(좌)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010(좌)
11	수산동	167-2	변경없음	건 물	천 막	m2	14.3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120(좌)
				수 목	은행나무 외	주	4			흉고=10~30cm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2	수산동	169-7	변경없음	건 물	기 와	m2	189.2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140(우)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010(좌)
				간 판	* 지주없음	개	1			sta.0+ 138(우)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146(우)
13	수산동	159-6	변경없음	화 단	1.5 X 16.0	m2	24.0	수산동 159-2	공진균	목재웬스 sta.0+ 210(우)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007(좌)
				간 판	지주간판	개	1			sta.0+ 215(우)
				수 목	향나무 외	주	16			흉고=10cm sta. 0+ 210(우)
				수 목	잣나무	주	1			흉고=20cm sta. 0+ 243(우)
14	수산동	160-3	변경없음	수 목	사철나무 외	주	2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흉고=5cm미만 sta.0+ 230(좌)
15	수산동	158-1	변경없음	담 장	함 석	m	21.0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H=2.0m sta.0+ 250(우)
			변경없음	수 목	벗나무 외	주	7			흉고=10cm sta.0+ 250(우)
16	수산동	150-11	변경없음	비닐하우스	강봉조3동	m2	78.1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sta.0+ 265(좌)
17	수산동	140-43	변경없음	수 목	배나무 외	주	17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남동구	흉고=10cm sta.0+ 500(좌)
18	수산동	167	신 규	건 물	기 와	m2	64.91	남동구 수산동 199	구도회	sta.0+ 130(좌)

한 전 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구분	위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수산동	변경없음	40.18	좌	8819R-072	한국전력	
2	수산동	변경없음	89.82	우		한국전력	전주번호누락
3	수산동	변경없음	113.21	중	8819R-184	한국전력	
4	수산동	변경없음	164	중	8819R-272	한국전력	
5	수산동	변경없음	226	좌	8819R-372	한국전력	
6	수산동	변경없음	256.83	좌	8819R-361	한국전력	
7	수산동	변경없음	270	우	8819R-362	한국전력	
8	수산동	변경없음	286	우	8819R-463	한국전력	
9	수산동	변경없음	340	우	88192R-551	한국전력	
10	수산동	변경없음	396.8	우	8819R-451	한국전력	
11	수산동	변경없음	436.41	우	8819R-541	한국전력	
12	수산동	변경없음	493.12	좌		한국전력	전주번호누락

체 신 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구분	위치(STA)	방 향	소 관 청	비 고
1	수산동	변경없음	0+ 005.6	좌		통신철주
2	수산동	변경없음	0+ 032.3	좌	한국통신	
3	수산동	변경없음	0+ 040.2	우	한국통신	
4	수산동	변경없음	0+ 056.1	우	한국통신	
5	수산동	변경없음	0+ 089.8	우	한국통신	
6	수산동	변경없음	0+ 113.2	중	한국통신	
7	수산동	변경없음	0+ 137.7	우	한국통신	
8	수산동	변경없음	0+ 150.0	좌	한국통신	
9	수산동	변경없음	0+ 180.0	좌	한국통신	
10	수산동	변경없음	0+ 211.0	우	한국통신	
11	수산동	변경없음	0+ 245.0	우	한국통신	
12	수산동	변경없음	0+ 286.0	우	한국통신	
13	수산동	변경없음	0+ 340.0	우		통신철주
14	수산동	변경없음	0+ 395.7	우	한국통신	
15	수산동	변경없음	0+ 422.7	우		통신철주
16	수산동	변경없음	0+ 455.3	좌		통신철주
17	수산동	변경없음	0+ 493.1	좌		통신철주
18	수산동	변경없음	0+ 498.7	좌	한국통신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87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동 소3-6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도림동 소3-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 남동구 도림동 19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2) 명 칭 : 도림동 소3-6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B=6m, L=1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5. 공사완료일 : 2010. 6. 8.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57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 7.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9	12 ~25	보조간 선	2,020	중로 1-168	서창동 284	일반 도로	-	1995. 4.6	
변경	중로	3	69	12	보조간 선	900	중로 1-325	시흥 시계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선형조정
신설	중로	1	458	20 ~25	보조간 선	1,090	중로 1-168	중로 1-325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02	대1-20	수산동 345-1	일반 도로	-	2006. 6.5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502	대1-20	수산동 345-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493	중로 2-212	도림동 272-31	일반 도로	-	2005. 4.4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493	중로 2-212	소로1-1 (도림동 645)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99	15	집산 도로	441	대1-14	장수동 475-3	일반 도로	-	1997. 6.5	
변경	중로	2	199	15 ~18	집산 도로	441	대1-14	장수동 475-3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76	중2-31	중2-199	일반 도로	-	2005. 12.26	
변경	소로	2	30	8	국지 도로	76	중2-31	중2-199	일반 도로	-		도로모퉁이 조정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69호선 (서창동 280일원)	중로3-69호선 (서창동 280일원)	◦ 노선 변경 -연장 : 2,020m→900m -폭원 : 20~25m→12m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시설 결정으로 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운연동간 교통수요에 따른 도로신설로 도로선형 변경 및 도로 확폭
-	중로1-458호선 (서창동 280일원)	◦ 노선 신설 -연장 : 1,090m -폭원 : 20~25m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시설 결정으로 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운연동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한 노선 신설
소로2-1호선 (수산동 369-2일원)	소로2-1호선 (수산동 369-2일원)	◦ 일부구간 선형변경 -면적 : 4,045㎡→4,030㎡	◦ 기 개설되어 이용중인 현행도로를 현황에 맞게 도로(소2-1호선) 선형 변경
소로3-1호선 (도림동 264-3일원)	소로3-1호선 (도림동 264-3일원)	◦ 일부구간 선형변경 -면적 : 3,279㎡→3,109㎡	◦ 지역주민 민원요청(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요청)에 의한 일부구간 도로선형 변경
중로2-199호선 (장수동 807-6일원)	중로2-199호선 (장수동 807-6일원)	◦ 일부구간 확폭 -폭원 : 15m→15~18m	◦ 장수로(중로2-199호선) 우회전차로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확폭
소로2-30호선 (장수동 807-6일원)	소로2-30호선 (장수동 807-6일원)	◦ 도로 모퉁이변 조정 -면적 : 645.7㎡→627.8㎡	◦ 장수로(중로2-199호선) 확폭에 따른 연결도로(소로2-30) 모퉁이변 조정

3)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노외주차장)	장수동 807-6번지	261.1	감) 31.1	230.0	-	면적변경

4)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감31.1㎡) 261.1㎡→230.0㎡	◦ 장수로(중로2-199호선) 확폭에 따라 편입되는 주차장 면적 축소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